



2022
개인정보보호
7대 이슈



2022

개인정보보호

7대 이슈

서로 신뢰하고 함께 보호하는 개인정보



Contents

2021 개인정보보호 이슈

국민의 정보주권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동의제도 수립

가명정보 도입에 따른
안전한 데이터 시대 본격화

영상정보 활용 보편화에 따른
新 개인영상정보 보호 체계 구축

신기술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통한
안전한 디지털뉴딜 정책 지원

국민의 정보주권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이동권 현실화

코로나19시대 K-방역과
K-개인정보보호의 균형

개인정보보호 컨트롤 타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상 강화

2022 개인정보보호 이슈

금융을 넘어 쏠 산업분야로
확산되는 마이데이터

데이터 가치를 높여주는
가명정보 활용 확산

신기술 환경에서 개인영상정보 보호와
산업적 활용의 조화

AI 등 신기술 기반 데이터 시대,
新 개인정보보호 이슈 심화

개인정보보호 위반 행위 증가에 따른
과징금 기준 합리화

삶의 편리성과 프라이버시 위협,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양면성

비대면 시대, 온라인플랫폼 이용 확대와
개인정보보호

조사 개요



조사목적

▶ 지난 1년간 키워드 분석 및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2022년도 개인정보보호에 있어 중요한 이슈를 도출하고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조사방법



국내·외 언론, 연구보고서, 논문 등의 빅데이터를 수집(21. 1월~9월) 및 분석하여 개인정보보호 핵심 또는 이슈 키워드 발굴

※ 특히, '22년부터는 군집 분석을 추가하여 정확도 제고. 즉, 주변 단어와 분리된 상태의 단어 빈도만으로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앞, 뒤 단어와 함께 의미를 분석함으로써 유의미한 키워드 도출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도출된 키워드 중 최근 정책 이슈 등에 대한 내·외부 관계자 검토 등을 통해 최종 20개 이슈 후보 선정

개인정보 전문가(약 50명) 대상 설문을 거쳐 최종 2022년도 개인정보보호 7대 이슈를 선정
최근 국내·외 개인정보 관련 이슈 분석 수행

7대 이슈 선정 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국내외 언론, 연구보고서 등의 키워드 사전조사	내외부 검토를 통한 주요 키워드 도출	전문가(50명) 설문을 통한 7대 키워드 도출	7대 키워드 관련 최근 동향, 자료 등 분석	전문가 검토 및 7대 이슈 최종 선정

2021년 개인정보보호 키워드



1 가명정보 결합

- 가명정보 도입 이후 관계 부처 등과 협업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의료+인구, 금융+보훈 등 5대 분야 7개 과제의 가명정보 결합 시범사례 발굴
- 가명정보 도입 1년을 계기로 가명정보 제도가 활성화 단계로 도약할 수 있는 현장 중심 규제 혁신과 맞춤형 지원 수요 증가

2 개인영상정보법 제정

- 관련 지침 개정으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어린이집의 CCTV 열람 요청이 가능해졌으며,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21년 8월)되었으나, 일각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
- 블랙박스, 드론, 자율주행차 등 이동형 영상기기가 일상생활 전반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법」상 규율근거가 미비하여 입법 공백 발생

3 개인정보보호 강화 기술

- 국내에서 '동형암호' 기술을 적용해 개인정보 유출 우려 없이 확진자 접촉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되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동형암호 관련 기술 가속화
-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신원확인(DID) 기술 도입이 전개됨에 따라 관련 법 추진이 진행 중이며, 미국 연방 하원에서는 미국 전역에 걸쳐 디지털 신원확인 인프라를 개선하는 내용의 법안을 공동 발의('21년 6월)

4 개인정보 유출 및 불법거래 (다크웹 유통)

- 국내 1,362개 웹사이트의 계정정보 2,346만 건이 해외 다크웹에서 유통되어 '불법 개인정보 데이터 베이스'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
- 개인정보위와 KISA는 사용자가 입력한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다크웹 등 음성화 사이트에 유출된 계정 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사해주는 '털린 내 정보 찾기' 개발 및 운영('21년 11월)

2021년 개인정보보호 키워드

5 과징금 부과

- 개인정보위에서는 페이스북(現 메타)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해 64.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21년 8월)
- GDPR 위반 관련 과징금 처분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자에 부과된 과징금 액수 또한 종전 대비 큰 폭으로 상승
- 룩셈부르크 감독기구는 아마존에 역대 최대인 7억 4,600만 유로, 아일랜드 감독기구는 왓츠앱에 2억 2,500만 유로의 과징금을 잇따라 부과하며 종전 최고 기록

6 국외 개인정보 이전 제한

- 한국-EU 적정성 초기 결정('21년 3월)으로 연내 최종 결정 후에는 역외이전에 필요한 별도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 없이 한국-EU 간 개인정보 이전 가능
- 유럽사법재판소(CJEU)는 '제3국으로 이전되는 EU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EU법이 요구하는 바와 본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시. 유럽집행위원회(EC)는 새로운 SCC 작성·채택 ('21년 6월)
* SCC는 적정성 결정이 없는 제3국으로의 개인정보 이전 시 EU 수준의 개인정보보호를 담보하기 위한 일종의 표준 계약조항
- 중국은 일반법인 데이터안전법을 '21년 6월 별도 제정하여 데이터의 수집부터 저장, 전송, 처리, 공유 등 유통 전 과정을 중국 정부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 기업에 대한 제재 근거로도 활용

7 글로벌 개인정보 규제 강화

- 미국에서는 버지니아주가 '21년 3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완료하고 '23년 1월부터 시행 예정. 콜로라도 주도 '21년 7월 법을 제정해 '23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이며, 이밖에 매사추세츠, 뉴욕 등 23개 주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추진 중
- 올해 제정된('21년 8월 제정, 11월 1일 시행)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은 중국 소비자를 상대하는 해외 기업들에게 GDPR보다 오히려 더 까다로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위반 시 처벌 수위도 매우 높음

8 글로벌 빅테크 기업 개인정보 이슈

-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개인정보 침해 이슈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 이슈가 제기됨
- 해외사업자(구글, 페이스북(現 메타), 넷플릭스) 개인정보 침해는 접근성 또는 언어적 이유로 특화된 조사 방법 및 대책 마련 필요

2021년 개인정보보호 키워드

9 데이터 거버넌스

- 유럽집행위원회(EC)가 발표(20년 11월)한 데이터 거버넌스 법안(Data Governance Act, DGA)은 EU 전역에 걸쳐 일관된 데이터 거버넌스 규칙 및 관행을 수립하여 데이터 가용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관련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조문을 일부 포함
- 한국,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데이터 산업 관련 ▲ 생산·분석·결합·활용 촉진 ▲ 인력 양성 ▲ 국제 협력 등 산업 육성 전체를 아우르는 기본법을 세계 최초로 마련(22년 4월 시행 예정)

10 마이데이터 (전송요구권)

-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의지대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자신의 데이터를 직접 수령하거나 제3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개인정보전송요구권의 도입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추진 중
- 금융분야는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마이데이터사업자 허가 및 본격 서비스 제공(22년 1월 예정) 준비 중
- 4차위는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정책을 통해 개인정보전송요구권의 법적근거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두도록 명시

11 신기술과 개인정보보호

- 자유 주제 채팅을 지원하는 AI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노출되어 사회적 이슈가 됨
- 안면인식 기술이 열화상 카메라, 신원 확인, 출입 통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됨에 따라 다양한 개인정보 침해 이슈 발생
- 스마트시티를 비롯한 공공부문의 사물인터넷, 드론 등 신기술 활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기기적 특성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에 어려움 발생

12 아동 개인정보보호 강화

- 정보주체로서 인식이 미흡한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활동 급증으로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증가하면서 법·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 증가
- 중국은 개인정보·프라이버시 보호 요건이 포함된 18세 이하 미성년자 보호법 개정안을 시행하여 아동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 네덜란드 소비자연합(Consumers' Association) 등이 'TikTok의 아동 개인정보 불법 수집·이용에 대해 이용자 아동 1인당 1,000~1,500 유로, 총 20억 유로 규모의 배상을 시행해야 한다'는 소송 제기

2021년 개인정보보호 키워드

13 온라인광고/ 쿠키

- 페이스북(現 메타) 등 광고 플랫폼이 이용자의 행태 정보를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데 따른 개인정보 이슈 발생
- 쿠키 등 이용자의 온라인 행동을 추적하는 기술들은 법적으로 '유효한 동의'를 획득해야 한다는 것이 EU의 판단

14 의료 정보 활용

- 의료 및 건강 정보는 민감정보로서 더욱 확실한 관리 체계와 기술을 요구
- 식약처는 의료현장에서 생성되는 건강보험 청구자료, 병·의원 의무기록 등 다양한 의료정보를 의약품 안전성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담은 '의료정보 데이터베이스 연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21년 6월)

15 자율규제

- 급변하는 신기술 환경에서 규정에 따른 사전통제 방식이 혁신을 저해하고 실질적 책임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
- 자율 또는 공동규제 기반으로 위험 수준에 비례하는 위험 통제 방안 검토 필요성 대두

16 정보주체 권리구제 실효성 제고

- 개인정보 침해 발생 시 정보주체 권리구제 방법인 침해신고, 분쟁조정에 대해 명확한 절차 및 구속성 부족 등 실효성 문제 대두
- 법 개정을 통해 분쟁조정 시, 의무적으로 응해야 하는 대상을 공공기관에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하고 분쟁조정위에 사실 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 추진

2021년 개인정보보호 키워드

17

코로나19 방역과 개인정보

-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QR 체크인, 역학조사 등 주요 처리시스템의 안전성 점검 및 수기명부와 열화상 카메라 등 일상에서의 개인정보보호 필요성 증대
-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 감염병 예방에 있어 각국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적용과 관련해 예외 규정을 적용하는 등 국가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음

18

프라이버시 중심 디자인

- 개인정보 안전조치 역량 강화 측면에서 열화상 카메라, 웹캠 등 민감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디지털기기 제조업자가 설계 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Privacy by Design)하도록 추진할 방침
- 프라이버시 중심의 디자인을 통한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 필요

19

프로파일링 규제 (자동화된 의사결정)

- 인공지능(AI)에 기초한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결정이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거부하거나 이의제기 혹은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도입 필요성 대두
-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 정부안이 '21년 10월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이 중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권리 도입 추진 중

20

플랫폼 사업자 규제

-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는 전통적인 위·수탁 관계와는 다른 양상으로 현행법 적용이 어려움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으나 개인정보보호 조치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책임성 강화 필요성 제기
- AWS를 이용하는 쿠팡, 아놀자(숙박), 스타일쉐어(의류), 집꾸미기, 스케어랩(여행) 등 플랫폼 사업자의 개인정보 유출·열람 사례가 총 9백만건 이상 발생

2022 개인정보보호 7대 이슈



KISA 한국인터넷진흥원

1 금융을 넘어 쏠 산업분야로 확산되는 마이데이터

2 데이터 가치를 높여주는 가명정보 활용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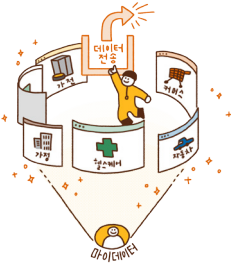
3 신기술 환경에서 개인영상정보 보호와 산업적 활용의 조화

4 5G 등 신기술 기반 데이터 시대, 개인정보보호 이슈 심화

5 개인정보보호 위반행위 증가에 따른 과징금 기준 합리화

6 삶의 편리성과 프라이버시 위협,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양면성

7 비대면 시대, 온라인 플랫폼 이용 확대와 개인정보보호



1 금융을 넘어 쏠 산업분야로 확산되는 마이데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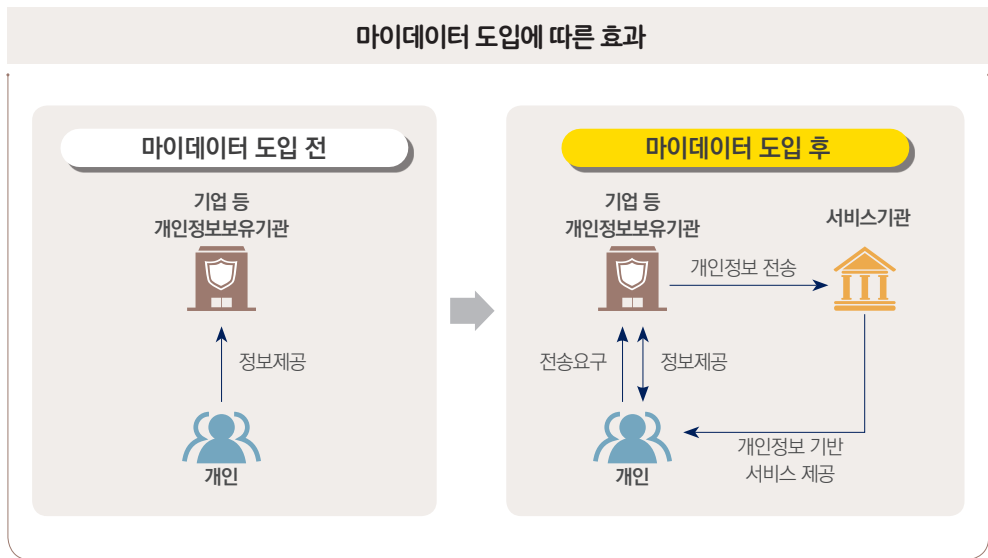
연관키워드 마이데이터,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전송지원 생태계 조성, 데이터 표준화

배경

- ① 데이터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경제성장을 이끄는 동력으로 부상하였으나, 활용가치가 있는 대부분의 데이터는 개인정보에 해당함에 따라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관심 고조
- ② 최근, '내 데이터는 내 뜻대로'라는 정보주체의 권리강화 인식 확산과 함께 스마트폰 대중화 등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용 여건 조성
 -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기 때문에 규제에 반하지 않고, 원본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활용 가치가 높은 데이터 활용 가능
 - * 정보주체가 본인정보를 적극 관리·통제하고, 이를 신용, 자산, 건강관리 등에 주도적으로 활용하는 것
- ③ 마이데이터 이용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에 근거하여 개인정보가 신뢰성 있고 안전하게 전송될 수 있는 기반 구축이 우선되어야 함
 - 국내의 경우 금융 분야를 시작으로 공공, 의료 분야 등 분야별로 전송요구권 도입을 위한 근거 마련 및 마이데이터 사업 추진 중
 - ** 정보주체가 정보제공자로 하여금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데이터의 전송을 요구하는 것

분야별 추진현황

- 금융: 신용정보법 개정('20년 8월), 마이데이터사업자 허가 및 본격 서비스 제공('22년 1월 예정)
- 공공: 민원처리법 개정('20년 10월), 전자정부법 개정('21년 12월 시행 예정)
- 의료: 마이 헬스웨이 도입방안 발표('21년 2월) 및 나의 건강기록 앱 서비스 제공('21년 3월)



(출처: 마이데이터 표준화 협의회 1차 회의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1년 11월)

I 현황 및 이슈

법제도 근거 마련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추진(21년 9월 개정안 국회 제출)

※ 4차산업혁명위원회 또한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정책'(21년 6월)에서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에 마이데이터 근거 마련 필요 명시

- (정보제공자 기준) 매출액, 개인정보 규모, 개인정보 처리 능력,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준 마련 및 전송요구 대상(정보주체 본인 또는 제3자)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
- (정보수신자 기준) 일정 수준 이상의 개인정보보호 능력(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시설·기술기준 충족 등)을 갖춘 자에게로만 정보 전송을 허용
- (전송대상 정보 범위) 동의 또는 계약에 따라 처리된 정보로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된 정보의 경우 전송대상에 포함(다만, 수집한 개인정보를 기초로 분석·가공하여 별도 생성한 정보는 제외)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담보하면서도 다양한 기관 지정이 가능하도록 지정제를 도입하되, 지정기준은 개인정보 처리의 안전성·신뢰성 확보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

전송지원 생태계 조성

- ▶ 데이터 표준화, 전송지원 플랫폼, 인증·보안, 연계 서비스 모델 발굴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
 - 특히, 정보가 원활하게 이동되기 위해서는 정보 제공자와 수신자 간 전송 정보의 대상과 형태에 대한 합의, 즉 '표준화'가 필수이므로 데이터 표준화는 우선 추진 필요
 - ⇒ 『마이데이터 데이터 표준화 방안』 발표(21년 9월, 관계부처 합동)

I 향후 대응

-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자·수신자 범위, 전송방법 등의 세부 시행방안 마련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 추진
- ▶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부처가 마이데이터에 관련되어 있는 만큼 범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전 분야에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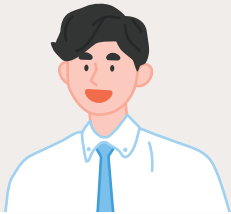


2 데이터 가치를 높여주는 가명정보 활용 확산

연관키워드 ▶ 가명정보, 가명 처리, 비식별 처리, 익명정보, 가명정보 결합


배경

- ▶ 데이터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의 핵심 동인으로 부상하면서 부가가치가 높은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해짐에 따라 ‘가명정보’ 개념 등장
 - 여러 산업 분야에서 데이터 이용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종 산업 간 데이터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시도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 가명정보란,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 ※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의미
 - ※ 익명정보란,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개인정보

- **살아있는 개인**의 관한 정보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개인정보(가명정보)

-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 가명 처리를 통해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익명정보

-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성명	핸드폰번호	주소	직업	통신료(월)	...
개인 정보	개인정보	김철수	090-1234-5678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 123-4	연구원	89,234원	...
	가명정보	김○○	xb12345^@\$adse#%\$!1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	연구원	89,234원	...
익명정보		-	-	서울특별시 중구	연구원	8만원대	...

현황 및 이슈

시범사례 발굴

- 개인정보위는 관계부처 등과 협업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가명정보 결합* 시범사례를 발굴하는 등 가명정보 제도 활성화 단계 도약을 위한 정책적 노력 확대

* 가명정보 결합이란,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결합시켜 활용하는 것으로 더욱 가치 있고 안전한 데이터 생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결합전문기관 지정

-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한 가명정보를 결합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3의 결합전문기관을 통해 결합을 수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결합전문기관이 지정·운영되고 있음

[결합전문기관 지정 현황('21년 11월 기준)]

소관 부처	결합전문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통계청, 삼성SDS, (주)케이씨에이,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롯데정보통신, 한국정보인증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암센터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SK주식회사(C&C), 더존비즈온, 비씨카드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산업통상자원부	한전KDN

가이드라인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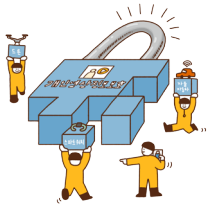
- 가명정보 활용에 필요한 구체적인 가명처리 기술·절차·관리체계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관련 규정의 개정 및 분야별 가이드 마련 지속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개정('21년 10월 개정)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발간('21년 10월 개정)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발간('21년 1월 개정)

데이터기본법 제정

- 한편, 데이터로부터 경제적 가치 창출 및 데이터 산업 발전의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21년 10월 제정, '22년 4월 시행 예정)되면서, 데이터의 생산·공유·활용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향후 대응

- 기업·기관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고 쉽게 가명처리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가명정보 활용 종합지원플랫폼」 구축 및 가명정보의 결합을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가명정보 결합 종합지원시스템」 고도화 추진
- 가명·익명처리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및 데이터 결합·연계 체계 등에 대한 국제표준 연구 선도 등 국내 기술의 국제 표준화 추진



3 신기술 환경에서 개인영상정보 보호와 산업적 활용의 조화

연관키워드 ▶ 지능형CCTV, 열화상 카메라,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개인영상정보보호법

배경

- ① 독거 어르신 보호, 반려동물 확인 등 다양한 용도의 가정용 CCTV 확산 및 스마트 시티 구축에 따른 CCTV 보편화 등으로 개인의 얼굴과 위치정보 등 개인정보 유출 우려

※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CCTV는 총 133만대에 달하고 있고, 앞으로는 교통·날씨 영상제공, 혼잡도 안내, 실시간 관광 등 다양한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실시간 CCTV 영상을 활용하는 경우 증가 예상
- ② 감염병 예방을 위한 확진자 동선 추적용 CCTV, 산업현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계 장치 오작동 감시용 CCTV 등 AI 기술을 접목한 지능형 CCTV도 보편화되고 있음
- ③ 드론, 웨어러블 카메라, 자율주행차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활용 확대 및 대규모 영상정보 유통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필요성 증대

 - 현행법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 중 고정형만을 규율하고 있어 바디캠, 드론, 웨어러블 카메라 등 이동형 기기의 특성에 맞는 기준 제시에 한계
 - 수술실 CCTV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전제로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을 허용할 수 있으나, 또 다른 정보주체인 의료진이 원치 않을 경우 촬영이 불가하다는 딜레마 발생
- ④ 법무부, 과기부가 '19년 MoU를 맺고 '22년 목표로 출입국자동심사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인공지능 식별추적시스템 구축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논란 발생

 - 법무부가 출입국 심사 과정에서 확보한 1억 7천만 건의 내·외국인의 안면이미지, 국적, 성별 나이 등의 개인정보를 과기정통부에 이관하고, 이를 다시 정보주체 동의 없이 민간 기업에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제공한 것은 제3자 제공에 해당한다는 주장
- ⑤ 한편, 관련 지침* 개정으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어린이집의 CCTV 열람 요청이 가능해졌으며,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 ('21년 8월)

* 공공·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지침(2중, 개인정보위)

현황 및 이슈

고정형 기기 개선

- ① 열화상 카메라, 지능형 CCTV 등 변화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사용 환경을 반영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의 및 운영 기준·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

이동형 기기 규율

- ▶ 드론, 자율주행차, 로봇산업 등 신기술 분야 개인영상정보 수집·이용 이슈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개별법에 개인정보 처리근거 신설 추진

※ 제21대 국회 계류 법안 5건(제정안 2건(서영교·민병덕 의원안), 개정안 3건(송갑석·박재호 의원안, 정부안)

안전한 활용수단

- ▶ 개인영상정보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의 권리침해 가능성이 낮고 책임성, 투명성 등 기본 원칙 보장이 가능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향후 대응

- ▶ 새로운 유형의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확산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보호 이슈 증가에 대비하여 개인영상정보 보호 방안 연구 및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 ▶ 개인정보 안전조치 역량 강화 측면에서 열화상 카메라, 웹캠 등 민감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디지털기기 제조업자가 설계 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Privacy by Design)하도록 권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온라인 개인정보 유출예방 및 피해구제 대책(21년 11월)에 명시

- ▶ CCTV 등에 의해 촬영되는 영상 중에서 개인의 얼굴이나 차량번호 등을 실시간으로 자동 탐지한 후 해당 부분을 마스킹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 실시간 마스킹 시스템 개발* 추진
 - 공공기관 CCTV 영상을 활용한 교통정보 제공 등 다양한 대국민 서비스에 적용하여 사생활 침해 우려 문제를 해소하고, 영상 마스킹 처리 소요 비용과 시간 대폭 단축 기대
 - 민간분야 인터넷 방송이나 드론·로봇 등 무인이동체를 통해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 촬영 장소 주변을 통행하는 보행자 등의 개인정보 침해 예방을 위해서 활용 가능

* 2021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수요 기반 혁신제품 개발·실증사업」 신규 과제, 2021. 11월~2024.10월 61.9억 투입(21년 11월)



4 AI 등 신기술 기반 데이터 시대, 新 개인정보보호 이슈 심화

연관키워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드론, 메타버스, 개인정보보호 기술

배경

- ①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등 데이터 기반 신기술 발전으로 데이터 산업 규모가 커지면서 국내에서도 데이터 활용에 대한 관심 고조

※ 데이터 시장은 '20년 약 19조원('19년 17조 원 대비 14.3% ↑), AI 학습용데이터 활용 횟수 약 9만 6천 건('19년 3만 8천 건 대비 153.4% ↑), 공공데이터 개방 건수 5만 5천 건('19년 3만 3천 건 대비 63.4% ↑)(2021년 4차 산업혁명 지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1년 10월 6일)
- ② 그러나, ICT분야 신기술은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사전 동의 중심의 현행법 하에서는 활용의 한계 발생

 - 데이터 기반 신기술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시급
- ③ 또한, 데이터 활용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데이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인정보의 유·노출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기술 개발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음

 - SNS, 비대면 서비스 확대로 이미지, 영상 등 정형화되지 않은 데이터가 급증하는 추세 이나, 가명·익명 처리 기술은 기초연구 수준에 머물러 있음
 - ※ 음성정보, 의료인의 자유 진단정보, 생체인식정보 등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데이터 고유 특성에 따라, 안전한 가명 처리 기법이 개발될 때까지 가명처리가 유보(보건복지부, '20년)되어 현재는 데이터 활용이 어려움
 -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개인정보 활용 신기술·서비스에 비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R&D 투자 생태계 미비

현황 및 이슈

- ① 현행법에서는 서비스가 어려운 자율주행 배달로봇, 시드론도시안전서비스 등 신기술 분야를 대상으로 영상정보 최소 수집, 비식별처리 등을 조건으로 규제 예외 시범 적용
- ② 챗봇,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신기술 서비스는 제공 중에 이용자(정보주체)에 의해 개인 정보가 생성되거나 공개될 수 있어, 이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처 방안 마련 필요

※ 프랑스의 개인정보감독기구 CNIL은 챗봇 민감정보 노출 경고, 목적 외 민감 정보 주기적 삭제 등을 다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챗봇 가이드' 발간
- ③ 한편, 최근 신기술 기반의 데이터 활용이 급증함에 따라, ICT 기술을 바탕으로 우수한 정보 보호 기술을 개발하여 새로운 유형의 데이터 활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이슈 증가

※ '이루다 AI서비스'로 불거진 개인정보 침해논란과 같이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신서비스에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국민 불안 가중

- ④ 국외에서도 신기술 발전에 따른 개인정보 제도 정비와 맞물려,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및 보호·활용 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개인정보보호 관련 비영리단체인 FPF*는 동형 암호, 엣지컴퓨팅 및 로컬 프로세싱 등 향후 10년간 주목해야 할 10가지 개인정보 보호 강화기술(PET**)을 분류하여 제시
 - * FPF(Future of Privacy Forum): 워싱턴DC 소재 개인정보보호 전문 싱크탱크 조직
 - ** PET(프라이버시 강화 기술, Privacy Enhancing Technology): 가명·익명처리, 개인정보 노출차단, 접근통제 등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기술의 통칭

향후 대응

- ④ 신기술 서비스 이용 시 정보주체 주의사항과 의도치 않은 개인정보 수집 등 개인정보처리자 대응수칙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 개발
 - ‘스마트 도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마련(‘21년 12월), ‘블록체인 서비스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마련(‘22년)
- ④ 국내외 관련 법제도 검토 등을 통한 신기술 분야 동의 등 규제 정비 및 규제샌드박스 등 실증사례를 통한 규제 개선 추진(‘22년)
- ④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한 활용 지원, 정보주체 권리 보장 등을 위해 개인정보에 특화된 보호·활용 기술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개발 로드맵(‘22~’26년)’ 수립(‘21년 11월)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의 연구개발(R&D) 추진체계 마련 및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개발 추진(‘22년, 30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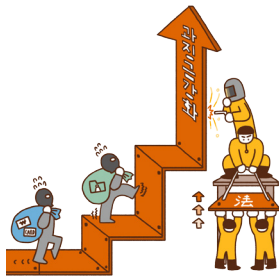
[2022년도 개인정보보호 기술 연구 과제 후보사업(안)]

연구 과제	핵심기술(안)	주요 내용
대화형 텍스트 데이터에서 개인정보 탐지기술	비정형데이터 개인정보 탐지	대화형 텍스트 등 텍스트 기반의 비정형 데이터 내 개인 식별 요소 자동 탐지 및 가명·익명처리 기술 개발
비정형 영상정보에서의 AI 기반 개인정보 검색 기술		악의적인 동영상, 사진 유포에 따른 사회적 피해 방지를 위한 인터넷 사이트 내 AI 기반 개인정보 관리 기술 개발
검색 등 서비스 맞춤형 온라인 활동기록 통제 기술 개발 및 검증	정보주체의 온라인 활동기록 통제	개인의 인터넷 열람(서핑) 기록을 추적하고 이를 활용해 광고하는 행위를 탐지하고, 정보주체가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기술 개발
실시간, 트랜잭션 데이터의 가명·익명처리 기술	차세대 가명·익명처리 및 결합 기술	트랜잭션 ¹⁾ 및 실시간 스트림 개인정보 ²⁾ 등 반정형 데이터에 대한 가명·익명처리 및 유용성·안전성 검증 기술 개발

주1) 개인의 정보가 여러 레코드 혹은 한 레코드 내 칼럼 당 일련의 여러 속성값으로 구성

주2) 개인의 정보가 레코드 단위로 실시간으로 동시에 수집·저장·비식별 처리되는 경우

(출처: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개발 로드맵,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1년 1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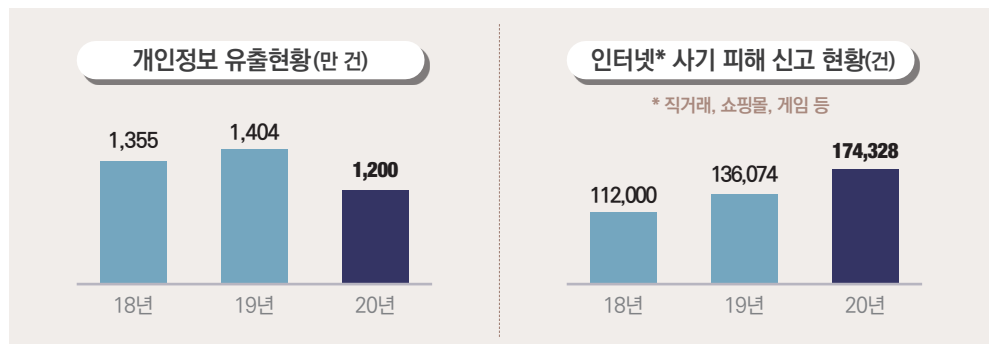
5 개인정보보호 위반 행위 증가에 따른 과징금 기준 합리화

연관키워드 ▶ 과징금, 형벌 제재 vs. 경제 제재, 매출액 vs. 관련 매출액

배경

-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된 지 10년, 개인정보의 출범으로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가 확립된지는 1년이 되었으나, 2021년 현재 개인정보보호 위반 사례는 더욱 증가하는 추세 - 다크웹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는 개인정보가 2,300만 건에 달하며, 매년 1천만 건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불법 거래되면서 사이버 범죄로 인한 2차 피해 우려

※ 인터넷 사기 피해 신고 현황: ('18년) 112,000건 → ('19년) 136,074 → ('20년) 174,328건



(출처: 온라인 개인정보 유출예방 및 피해구제 대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1년 11월)

- 개인정보 침해행위는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데,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원상회복보다는 형벌 중심의 제재를 하고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 현행법은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3% 이하를 과징금으로 하고 있으나, '관련 매출액' 산정이 어렵고 수범자 일부(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게만 부과되어 실효성·형평성 논란
- 형벌의 범죄구성요건을 엄격히 하고 경제적 제재로서의 과징금을 강화하는 등 형벌과 과징금 기준을 합리화할 필요성 존재

현황 및 이슈

- 전 세계적으로 국가별 개인정보보호 법제를 마련하고, 위법 행위에 대한 제재와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과징금 부과 금액 및 건수도 증가되고 있음

※ EU GDPR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 '21년 10월(1월~10월) 과징금 부과 건수는 340건, 누적 금액 규모는 10억 5,216만 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건수는 34%, 금액은 665% 증가

※ 국내는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1년간('21년 8월 기준) 총 106건 제재 처분, 누적 과징금 69억 7천만 원 부과

[2021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과징금 처분 주요 사례] - 국내 현황 빅테크와 중복

구분	과징금 부과 대상	과징금 규모	위반 주요 내용	시기
EU	Amazon (독셈부르크)	7억 4,600만 유로 (약 1조 200억 원)	· 타깃 광고 등 상업적 목적 위해 고객 동의 없이 개인정보 활용	'21년 7월
	WhatsApp (아일랜드)	2억 2,500만 유로 (약 3,080억 원)	· 이용자 지인 전화번호 등을 동의 없이 수집 및 처리	'21년 9월
	Notebooksbilliger (독일)	1,040만 유로 (약 142억 원)	· 직원 동의 없이 CCTV로 직원 감시	'21년 1월
국내	페이스북 (現 메타)	64억 6천만 원	· 동의 없이 이용자 얼굴 인식 서식 생성 및 수집	'21년 8월
	천재교과서	9억 335만 원	· 접근권한 없는 천재교육에게 시스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해 개인정보 유출	'21년 10월
	넷플릭스	2억 2천만 원	· 서비스 가입 절차 완료 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	'21년 8월

법률 개정 추진

- ▶ 형벌규정은 완화하는 대신 과징금 부과기준 상한을 '전체매출액'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21년 9월 28일, 정부 발의)
- ▶ 이러한 개정방향에 대하여 산업계, 관계 부처 등에서 과도한 과징금 상향이라는 우려도 제기
 - 이에 대해, EU GDPR 등 해외 사례를 참조하여 비례성·효과성을 법률에 명시하고, 하위 법령 개정 시 비례성 기준 반영 검토 중
 - ※ (EU GDPR) 2천만 유로 또는 전세계 총 매출액의 4%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
 - 더불어, 과징금 산정 시 고려요소를 다양화함으로써 기계적 과징금 산정이 아닌 개별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개선 검토 중

과징금 연구

- ▶ 전체 매출액 기준의 과징금 상한 하에 과징금의 비례성·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산정기준 및 절차 연구 추진
 - 개인정보위는 산업계·시민사회 등에서 추천한 인사와 법률 전문가로 '과징금 부과기준 연구반'을 구성하고 1차 회의('21년 11월 3일) 개최

향후 대응

- ▶ 전체 매출액 기준의 과징금 상한 하에 과징금의 비례성·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산정기준(「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및 고시에 반영) 마련
- ▶ 전문가·산업계·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연구반을 구성·운영하여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관련 하위규정(시행령·고시 등) 개정안에 반영
- ▶ 한편, 과징금 부과 방식 외에도 온라인 개인정보 유출 예방을 위해 국민들이 자신의 개인정보 유출 여부와 인터넷 사기 피해 이력을 조회할 수 있게 하는 '털린 내정보 찾기' 서비스도 개시('21년 1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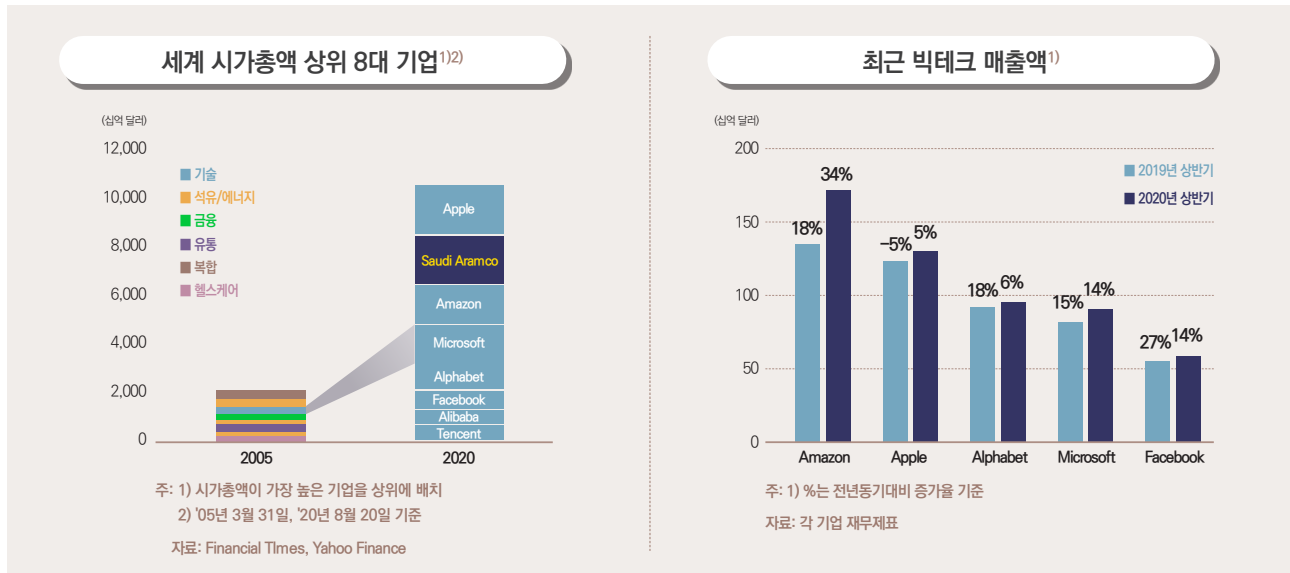


6 삶의 편리성과 프라이버시 위협,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양면성

연관키워드 FAANG, 알고리즘 편향성, 맞춤형 광고, 국내 사업자 역차별 이슈

배경

- ① FAANG(Facebook(現 META), Apple, Amazon, Netflix, Google)이라 불리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음
 - 온라인 플랫폼으로서의 편리성과 편익이 증가하고 있으나 한편으로 시장지배력 남용, 데이터 집중화, 각종 윤리적 이슈 등 부작용도 부각
- ② 빅테크 기업은 주로 디지털경제를 기반으로 급성장하고 있으며, 디지털경제는 네트워크 효과와 규모의 경제 등으로 인해 독과점화 우려가 큼



(출처: 한국은행 국제경제리뷰, '21년 3월)

현황 및 이슈

- ① 전 세계적으로도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통제하기 위한 다양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중국은 빅테크 기업 제재를 겨냥한 법으로 평가 받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21년 11월 1일)
 - 해당 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는 반드시 중국에 보관해야 하며, 해외 이전 시 국가 담당부서의 안전성 평가를 거쳐야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로 민간에 적용
 -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0만 위안(약 90억 원) 또는 전년도 기업 매출액의 최대 5% 까지 벌금을 내야하며, 위반소지가 심각할 경우 정부가 영업허가증을 취소할 수 있음
 - 미국 전역에서도 빅테크 그룹에 대한 규제 법안이 도입되고 있으며, 특히 버지니아 주의회는 구글과 페이스북(現 메타)이 수집한 자신의 정보를 열람하고 외부 판매 금지를 요청하는 개인정보보호법 통과('21년 3월)

- ① 최근 페이스북(現 메타)는 내부자 고발로 인해 빅테크 기업의 과도한 수익추구, 알고리즘 편향성 등 윤리적 이슈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22년 1월부터 정치·종교·인종 등 민감한 주제에 대한 맞춤형 광고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
 - 알고리즘 편향성 이슈는 인터넷 검색서비스나 SNS의 맞춤형 정보 제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필터버블(filter bubble) 현상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논란 야기
- ② 한편, 최근 구글, 페이스북(現 메타), 애플, 틱톡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아동·청소년 대상 타겟팅 광고 및 위치추적 기능 제한, 영상 등 업로드 시 공개범위 선택제 등을 담은 강화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잇달아 발표
- ③ 국내의 경우에도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개인정보 침해와 독점적 지위 남용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조사와 위반행위 처분 등이 강화되는 추세
 - 개인정보위는 국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 글로벌 기업(페이스북(現 메타)*, 넷플릭스**, 구글***) 대상 과징금(총 66.6억 원) 부과 등 시정조치('21년 8월)
 - * 페이스북(現 메타)은 이용자 동의 없이 '얼굴 인식 서식'을 생성·수집했으며, 위법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개인정보 처리주체 변경 미고지,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국외이전 관련 내용 미공개 등 위반
 - ** 넷플릭스는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과징금 2억 2,000만 원, 과태료 320만 원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
 - *** 구글은 결제정보·직업·학력 등 개인정보를 추가 수집할 때 법정 사항 고지 불명확, 국외 이전 개인정보 항목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 처리 미흡으로 개선 권고
 - 또한,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시 신고·통지 지연 및 접근 통제 위반 등의 사유로 MS에 과징금 340만 원과 과태료 1,300만 원을 부과하는 등 시정조치 명령('21년 6월)

향후 대응

- ① 글로벌 빅테크 기업은 여전히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된 편파적 방침 적용과 처리 관행을 고수하고 있어 국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 권리 침해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검토
- ②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개인정보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내외 공조 강화 및 알고리즘 편향성 등 윤리적 이슈에 대한 투명성 제고, 사회적 파급효과 등 연구 강화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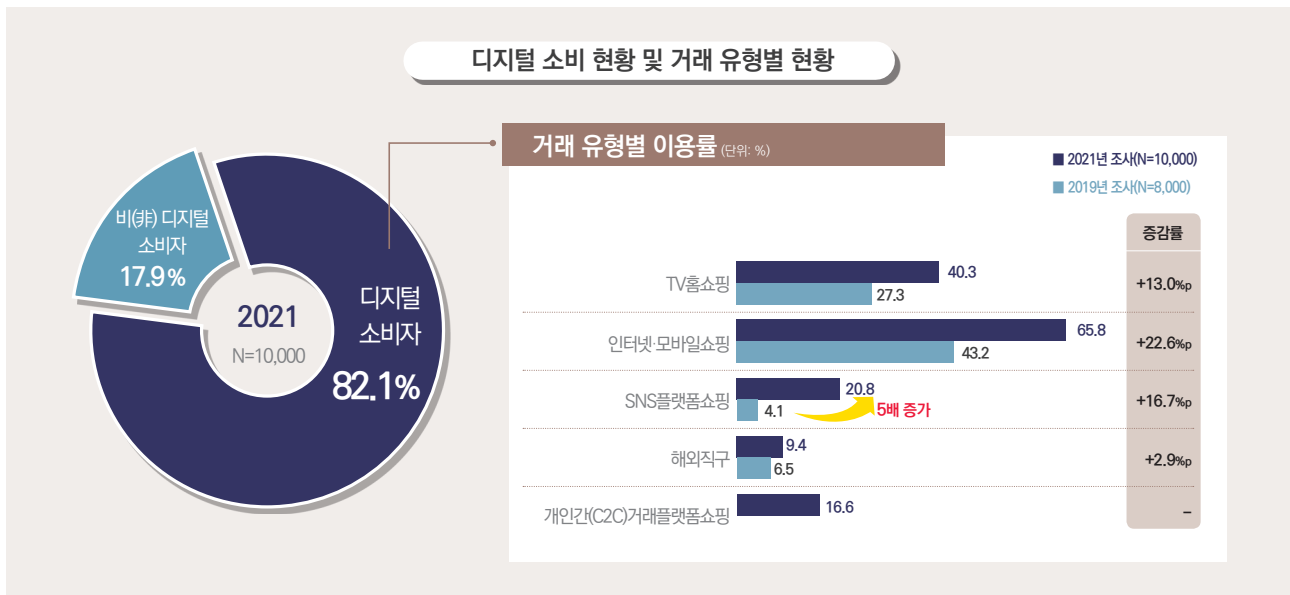


7 비대면 시대, 온라인 플랫폼 이용 확대와 개인정보보호

연관키워드 온라인 플랫폼, 오픈마켓, 배달앱, 맞춤형 광고,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

배경

- ▶ 코로나19 감염병 유행 이후 국민의 비대면 활동 증가로 디지털 소비가 약 2배 증가('19년 44.0%→'21년 82.1%)하면서 상거래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온라인플랫폼의 영향력 증가
 - 온라인 플랫폼은 온라인 거래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거래 중개, 신산업에서 전통산업 까지 다양한 분야와 영역에 진출하면서 국민의 삶과 시장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 증대



- ▶ 또한, 온라인 플랫폼 기업 거대화에 따라 개인정보를 포함한 대량의 데이터가 수집·집적되면서 개인정보 유출, 부적절한 처리 등 침해 위협 및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
 - 디지털 소비 과정에서 겪은 소비자 불만·문제 중 '개인정보 유출·사기 불안' 24.9%
 - ※ 디지털소비자의 불만·문제 내용별 경험률(중복응답): 품질 불량(34.3%), 허위·과장 표시·광고(32.9%), 상품·서비스 대비 비싼 가격(29.0%), 개인정보 유출·사기 불안(24.9%), 교환·취소·환불 등 피해 해결 어려움(24.4%) 등
 - (출처: 2021 한국의 소비생활지표 조사, 한국소비자원, '21년 11월)
 - 주요 온라인 플랫폼사(33개) 3개 중 1개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개인정보 처리 시 문제점: ▲ 임의적 개인정보 수집·동의 ▲ 광고·마케팅 활용 미동의 시 회원가입 불가 ▲ 필수/비필수 사항 일괄 동의 ▲ 제3자 동의 관련 추상적 고지 등
 - (출처: 온라인 플랫폼 개인정보처리방식 실태조사, 경기도, '21년 10월)

현황 및 이슈

- ① 온라인 플랫폼의 전 방위적 영역 확대에 따른 독과점, 지나친 시장지배력 등이 문제가 되면서 국내외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공정경쟁, 사회적 책임 요구 및 규제 움직임도 가속

 -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중심으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점화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오고 있으며 각종 규제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 '아마존 저격수' 리나 칸을 연방거래위원장으로 임명하고 빅테크 M&A 경쟁 저해 등 감시 행정명령을 승인하였으며, 미국 의회는 5개 플랫폼 반독점법 제정안을 발의하는 등 플랫폼 기업에 초당적 대응
 - EU는 미국의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으로부터 자체 시장을 보호하는 한편, 전통적으로 중요시하고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플랫폼 기업 규제 강화
 - ※ EU는 2018년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 제정 이후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침해행위 규제를 강화해 오고 있으며 최근 디지털시장법과 디지털서비스법 초안을 발표하며 플랫폼 기업을 '게이트키퍼(gate keeper)'로 규정하여 각종 의무 강화
 - 중국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점, 시장 지배력 남용 등을 규제하기 위해 '플랫폼경제 반독점 가이드라인'을 '21년 2월 발표하였고, 기존의 네트워크 안전법 외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을 통해 플랫폼 기업 규제를 강화

- ② 한편, 국내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온라인 플랫폼 독점화 및 맞춤형 광고 등에 대한 규제를 추진 중이나 부처 업무 중복으로 일부 혼선 발생

 -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과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방송통신위원회)'이 각각 입법 추진 중
 - ※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에서는 온라인 판매자가 맞춤형 광고를 행하는 경우, 그 내용과 방법을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맞춤형 광고 수신 여부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업계 반발

- ③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위반 행위에 대한 개인정보위의 조사·처분 및 개인정보보호 공동규제 노력 강화

 - ※ 쿠팡, 네이버 등 7개 오픈마켓 사업자 대상으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한 인증수단 미적용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21년 5월)
 - ※ 클라우드 서비스인 AWS(Amazon Web Service)를 이용하는 야놀자(숙박), 스타일쉐어(의류), 집꾸미기, 스케어랩(여행) 등 4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개인정보 접근통제 조치 위반행위 등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21년 9월)
 - 개인정보 접근통제, 접속기록, 암호화, 개인정보 파기, 교육 등 6개 항목에 대해 온라인 쇼핑 플랫폼 사업자 등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담은 온라인플랫폼 공동규제(안) 제도화
 - ※ 11번가(주), 네이버(주) 등 온라인쇼핑 플랫폼 사업자 9개사와 개인정보위, KISA 등은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온라인 쇼핑 개인정보보호 공동규제 선포식' 개최('21년 11월 17일)

향후 대응

- ① 개인정보를 대량 수집·처리하는 오픈마켓,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의 안전조치 역량 강화를 위해 산업계와 함께 공동규제로 온라인 플랫폼 안전조치 기준 마련 예정

- ②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혁신성과 사회적 기여를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에서의 합리적 규제를 고려하고, 국외 거대 플랫폼 기업과의 공정한 경쟁을 위한 역차별 이슈 해소 등 노력 필요